

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 CCTV 설치에 따른

행정예고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3. 5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

1. 행정예고 내용

- 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청취

2. 설치목적

-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

3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4. 행정예고 기간

- 2019. 3. 5. ~ 3. 24.(20일간)

5. 공고방법

- 인천북부지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el.go.kr/local/incheonbukbu/index.do>)
- 인천북부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work.go.kr/incheonbukbu/main.do>)

6.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

- 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 총 1대
 - 촬영범위: 주차장 및 청사 울타리

7. 의견제출

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으로 2019. 3. 23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간: 2019. 3. 5. ~ 3. 24.(20일간)

※ 위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나. 제출방법: 우편, 방문 제출 또는 팩스(FAX : 032-556-0941)

다. 기재내용: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연락처, 주소,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라. 제출장소: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, 3층 지역협력과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: 지역협력과 오주학(☎ 032-540-7924)

[붙임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